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김중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52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11. 30.

발의자 : 김중로 · 박찬대 · 김관영
김성수 · 이동섭 · 장정숙
정재호 · 안규백 · 이종걸
김동철 · 장병완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·사기업체 또는 공·사단체는 이 법이 정한 비율의 범위까지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·가족을 고용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를 선택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그 업체 등이 선택한 자에 대한 고용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음.

그러나 그 고용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아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거두기에 미흡함으로 과태료를 보다 상향 조정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·가족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·가족의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83조).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3조제1항 중 “500만원”을 “1천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3조(과태료) ①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<u>500만원</u>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	<p>제83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1천만원----- -----.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